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3
----------	-----

제출연월일 : 2008. 11. .
제출자 : 양주시장

□ 제안이유

-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해석되어 감면 되거나,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 관련 법률의 개정 및 폐지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장애인 소유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화 함 (안 제2조, 제3조)
- 당초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 ~~舊행정자치부 자방세심사결정(행심 제2004-353호, '04.11.30)~~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 발생
 -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 신설
- 나. 「오지개발촉진법」의 폐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구체적인 근거 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2항)

- 라.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함(안 제13조)
- 마.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아파트형공장과 세분하여 새로운 조문을 만듬(안 제14조, 제14조의2)
- 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함.(안 제20조)
- 사. 「신용보증재단법」 개정사항을 반영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7조 제1호 부터 제7호”로 조문을 수정함.(안 제22조)
- 아. 법률명칭의 변경에 따른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의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4조)
- 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4호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함.(안 제29조 제1항)
- 차.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함.(안 제9조, 제17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의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제3호중 “건설교통부” 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중 “재산세” 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4조 중 제1항을 “제14조 본조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을 제14조의2로 하고 제목을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17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제20조 중 “주거용부동산” 을 “주택” 으로 한다.

제22조 중 “내지 제6호” 를 “부터 제7호” 로 한다.

제24조 중 제목의 “유통산업지원” 을 “물류산업지원” 으로 하고,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종 창고업 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로 한다.

제29조 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생 략)</p> <p>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궐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 4. (생 략)</p> <p>③ (생 략)</p>	<p>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_____</p> <p>(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_____.</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궐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p>	<p>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 _____</p> <p>_____</p> <p>(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p>

현 행	개 정 안
<p>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 한다.</p> <p>1. ~ 4. (생 략) ② (생 략)</p>	<p>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p> <p>1.~2. (생 략)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7 (생 략)</p>	<p>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p> <p>1.~2. (현행과 같음) 3. 국토해양부</p> <p>4.~7 (현행과 같음)</p>
<p>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p> <p>1. ~2. (생 략)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p> <p>취락지구정비계획</p>
<p>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 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p>	<p>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p>

현 행	개 정 안
<p>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생략)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 	<p>-----</p> <p>-----</p> <p>-----</p> <p>-----</p> <p>-----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p> <p>-----</p> <p>-----</p> <p>-----</p> <p>-----</p> <p>-----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p> <p>-----</p> <p>-----</p> <p>-----</p> <p>-----</p> <p>-----</p> <p>-----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p> <p>-----</p> <p>-----</p> <p>-----</p> <p>-----</p> <p>----- 「현행과 같음」 -----</p> <p>② -----</p> <p>-----</p> <p>-----</p> <p>-----</p> <p>-----</p> <p>-----</p> <p>-----</p> <p>-----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p> <p>-----</p> <p>-----</p> <p>-----</p> <p>-----</p> <p>-----</p> <p>-----</p> <p>-----</p> <p>-----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p>

현 행	개 정 안
<p>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생 략)</p> <p>제14조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0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p> <p>-----</p> <p>-----</p> <p>2. -----</p> <p>-----</p> <p>-----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p> <p>3. (현행과 같음)</p> <p>제14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③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종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③ 삭제</p>
<p>제14조의 2 신설</p>	<p>제14조의 2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종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p>

현 행	개 정 안
	<p>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을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7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p> <p>1. ~ 2.(생 략)</p> <p>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p>	<p>제17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현행과 같음)</p> <p>1. ~ 2.(현행과 같음)</p> <p>3. -----</p> <p style="text-align: right;">----- <u>국토해양부장관</u></p> <p>-----</p> <p>-----</p> <p>-----</p>
<p>제20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2. (생 략)</p>	<p>제20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p> <p>-----</p> <p>-- (주택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2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p> <p>----- <u>부터 제7호까지</u></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강연】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4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강연】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종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p>
<p>제29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강연】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	<p>제29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강연】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